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교원의 정치 운동 허용 >

■ 백승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802호)

2024. 8.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교원의 정치 운동 허용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백승아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2024. 7. 16.
3. 회부연월일: 2024. 7.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38개 OECD 국가 중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시민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임. 이에 대해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여러 차례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와 차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그리고 최근 학생의 참정권이 확대되어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교육할 책임이 있는 교사는 정치적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임. 이로 인해 학생들은 시민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50만 현장 교사의 교육 전문성이 국가 교육정책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는 정치적 활동이 가능한 대학교수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음.

주요내용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정치 운동의 금지’ 및 ‘정치운동죄’ 조항을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5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1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0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 교원의 정치 운동 허용

개정안은 정치 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제84조를 「교육공무원법」에서 적용하지 않는 조항에 포함하여, 교원의 정치 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

현 행	개 정 안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① ~ ④ (생략) ⑤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제1항제1호,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 제2항 및 제50조는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 <u>제65조 및 제84조</u> <u>는 교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u> -----,

「대한민국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¹⁾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권력이나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 정치영역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특히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육방법이나 교육내용이 당파적 편향성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 또는 간섭당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써 보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²⁾

「대한민국헌법」의 위임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 운동과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며,³⁾

1) 「대한민국헌법」

제7조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31조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2)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헌법재판소, 2021헌바295, 2024.6.27.)

3)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이 정치적·파당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교원이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목적으로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⁵⁾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되므로,⁶⁾ 기본적인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4조(정치 운동죄) ① 제6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제84조의2(벌칙) 제44조·제4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교원) ④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6)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 근무 교육공무원)을 적용받고 있으나, 일부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며,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에서 별도로 규정함.⁷⁾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교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및 제84조(정치 운동죄),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및 제82조(정치 운동죄)에 대한 적용 제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은 교육공무원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은, 「정당법」 제2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치활동이 가능함.⁸⁾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7) 「교육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8)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제84조를 적용받는 유치원, 초·중등학교 교원은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고(제1항), 투표 권유 운동 등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제2항), 이와 같은 행위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도 안 되고(제3항),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해지며(제4항), 제65조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됨.⁹⁾

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

9)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제84조(정치 운동죄) ① 제6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이와 같이 현행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대학교원과 달리 유치원,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정치 활동 제한규정이 적용되는데, 교육공무원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기본권 주체로서 정치적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의 지위를 모두 지니고 있으므로,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정치 행위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문제가 제기됨.¹⁰⁾

이에 개정안은 「교육공무원법」에서 정치 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및 제84조(정치 운동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유치원, 초·중등학교 교원의 정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교원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에서 교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에 대한 권고」 결정문을 통해, 공무원·교원에 대해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조항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1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5개 교원단체, 교원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국회 입법 촉구」, 2024.7.16.

결정문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개인적 정치적 표현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구분하면서,

「국가공무원법」 제84조는 제65조의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65조제4항에서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인 ‘정치적 행위의 의미 및 한계’에 관하여 실질적 내용을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보았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하게 시민적 지위에서 누릴 수 있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보호법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과 관련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4항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제2항¹¹⁾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의 소지가 상당하다고 보았음.

한편, 헌법재판소는 초·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정당법」 제22조제1항 단서 제1호 본문

1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65조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과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실는 행위

4.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완장·복식 등을 제작·배부·착용하거나 착용을 권유 또는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과,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¹²⁾에서,

‘정당’에 관한 부분은 교육공무원의 정당 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던 선례¹³⁾의 견해를 유지하였는데,

그 사유를 살펴보면, 국가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초·중등학교 교원이 당파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는 직무 내·외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직무 내 정당 활동 규제만으로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한편, 일정한 범위 내의 정당 관련 활동은 공무원에게도 허용되며(침해의 최소성), 정치적 중립성과 초·중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본권 보장이라는 공익은 공무원들이 제한받는 사익에 비해 중대하므로(법익의 균형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함.

또한 「초·중등교육법」상 교원과 달리 「고등교육법」상 교원은 필요한 경우 학문연구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규정¹⁴⁾

12)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확인(헌법재판소, 2018헌마551, 2020.4.23.)

13) 정당법 제6조 제1호 등 위헌확인(헌법재판소, 2001헌마710, 2004.3.25.),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헌법재판소, 2011헌바42, 2014.3.27.)

14)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되어 있어, 대학의 교원에 대해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반면,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 정당 가입의 자유를 금지하더라도, 이는 양자 간 직무의 본질과 내용, 근무 태양이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

다만, 헌법재판소는 ‘그 밖의 정치단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는데,

그 사유를 살펴보면,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 형벌의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나(입법목적의 정당성), 입법 목적과 무관한 단체, 교원의 직무와 무관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단체의 결성 등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 정치 행위의 전면적 금지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 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 그로 인하여 교원이 받게 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약 등은 매우 크므로(법익의 균형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결정함.

참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관련하여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3건의 의원발의 법률안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률안의 심사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표 1]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현황

구분	현 행	김문수의원안 (제803호)	김성회의원안 (제1862호)	민형배·신장식 ·전종덕의원안 (제1886호)	정부안 (제1710호)
제1항	공무원의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 관여·가입 금지	<삭제>	<삭제>	<삭제>	정치 운동 금지 대상 정치단체의 범위 명확화
제2항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그 지위를 이용한 경우로 한정	(현행과 동일)	그 지위를 이용한 경우로 한정	(제1항 개정에 따른 자구 정리)
제3항	제1항·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 요구 등 금지	(제1항 개정에 따른 자구 정리)	(제1항 개정에 따른 자구 정리)	(제1항 개정에 따른 자구 정리)	(현행과 동일)
제4항	정치 행위 금지의 한계 대통령령등 위임	<삭제>	<삭제>	<삭제>	(현행과 동일)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또한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 이래, 2022년 같은 법 개정으로 피선거권 연령이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어 선거일 기준 18세로 피선거권이 인정된 학생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2022년 「정당법」 개정으로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연령이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어 16세 이상의 학생은 정당활동을 할 수 있게 됨.

이와 같이 선거권 등에 대한 하한 기준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정치활동이 가능한 학생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측면과 함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따라 가치중립적인 진리교육을 보장하고, 인간의 내면적 가치 증진에 관련되는 교육 분야에서는 당파적인 정치적 관념이나 이해관계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¹⁵⁾는 견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2] 선거권 등 연령 기준

구분	근거규정	내용
선거권	공직선거법(제16864호) 제15조 2020.1.14. 개정, 공포일 시행	19세 이상 → 18세 이상
피선거권	공직선거법(제18790호) 제16조 2022.1.18. 개정, 공포일 시행	25세 이상 → 18세 이상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정당법(제18792호) 제22조 2022.1.21. 개정, 공포일 시행	18세 이상 → 16세 이상

자료: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해당 조항 정리

15)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헌법재판소, 2021헌바295, 2024.6.27.)

참고로, 개정안은 교원의 정치 운동 허용과 관련하여 발의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801호, 백승아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의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의 심사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표 3] 교원의 정치 운동 허용 관련 의결 전제 개정법률안

구분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 회부일	소관 상임위원회	주요 내용
1	정당법 (제2201801호)	백승아의원	2024.7.16./ 2024.7.17	행정안전위원회	유·초·중등 교원의 정당 발기인 및 당원 자격을 허용하되, 정당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된 교원이 그 직을 수행하면서 학생에게 정치적·당파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할 수 없도록 함(안 제22조)
2	정치자금법 (제2201799호)	백승아의원	2024.7.16./ 2024.7.17	행정안전위원회	「정당법」 개정으로 당원이 될 수 있게 된 사립학교 교원을, 선거관리위원회 기탁 방식으로만 정치자금 기부가 가능한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22조제1항)
3	공직선거법 (제2201800호)	백승아의원	2024.7.16./ 2024.7.17	행정안전위원회	「정당법」 개정으로 당원이 될 수 있게 된 사립학교 교원을,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는 공직선거 입후보 제한 직종에서 제외함(안 제53조제1항제7호)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위반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84조는 국가와 일반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일반 법익 보호 차원의 규정이므로, 교육공무원 등 교원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적용 여부 등의 본질적인 검토 및 개정 없이, 교육공무원 등 교원에 대해서만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및 제84조(정치 운동죄)를 적용 예외로 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제53조제5항만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법률안 개정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유·초·중등교원이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므로 현행 법률 유지가 바람직하므로, 법률안 개정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경기도교육청은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은 정치적·당파적 개입과 지배에서 배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정치적 영역에 개입되지 않아야 하고, 교육 현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심어주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법률안 개정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4항에서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기본법」 제6조에서 규정한 교육의 중립성은 미성숙한 초·중등학생이 사회 공동체 내에서 책임감 있고 독립적인 선량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 분야에 당파적·정치적 관념이나 이해관계가 그대로 적용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교원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성장과정의 초·중·고등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및 제84조(정치 운동죄)를 배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89